

의안번호	제 800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이우완 · 백태현 · 김상찬 · 김태웅 · 백승규 · 김경희 이종화 · 심영석 · 전홍표 · 한은정 · 김우겸 · 박남용 김종대 · 조영명 · 정순욱 의원
발의연월일	2021. 8. 31.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00
----------	-----

발의연월일 : 2021. 8. 31.

발 의 자 : 이우완·백태현·김상찬·김태웅·백승규·김경희
이종화·심영석·전홍표·한은정·김우겸·박남용
김종대·조영명·정순욱 의원(15명)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우수콘텐츠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호 ~ 4호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호 생략)

■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약 서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이우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을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우수콘텐츠의 활용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검토 내용

- 조례안 제9조(편의제공) ⇨ 조문 제목 수정
 - 구체적 의미 전달을 위해 편의제공에서 공공시설 활용으로 수정

□ 종합의견

- 상위법 저촉 여부 : 저촉사항 없음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 ❖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임.

I 조례 제정 개요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및 제22조(조례)
-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창원시 포상 조례」

2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이우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상정시기 :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21. 9.)
- 제안이유 :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우수콘텐츠의 활용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II 검토내용

①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② 조문 검토 의견

조례안	검토내용	비고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수정

○ 조례안 제9조 조문 제목을 편의제공에서 공공시설 활용으로 수정

※ 조례 제정된 20개 지자체 비교 : 공공시설 활용(8), 해당 조문 없음(12)

③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21. 7월 기준)

○ 제정 현황 : 20개 지자체(광역시 5, 기초 15)

※ 경남 : 조례 제정 시·군 없음

구분	자치법규명	제정일	비고
광역시·도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7.1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2019.02.15.	
충청북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2021.05.18.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2.30.	
기초 시·군·구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12.30.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3.2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8.09.1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7.09.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9.26.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5.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2018.12.2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2021.04.09.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2.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3.30.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9.29.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6.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4.21.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0.01.
	전주시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5.15.

4] **소요 예산**

- 조례안에 따른 운영단체 경비 지원 및 미디어센터 설치·운영비 등 재정 소요 수반이 예상되나, 조문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타 지자체 관련 예산편성 현황(해당연도 본예산 기준)

구 분	연도별 관련 예산 편성액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서울 노원구	96,520	90,050	72,460	938,320	705,000
인천 연수구	428,118	302,160	358,260	-	-
부산 남구	13,000	-	-	-	-
전북 전주시	40,000	35,000	-	-	-

III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여겨지며,
-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

- ▶ 영상(2) : 진전면 주민자치회, 푸른내서주민회
- ▶ 인쇄(10) : 북면.대산면.명곡동.봉림동.가음정동.웅남동.오동동.양덕2동 주민자치회 [마을신문]
팔룡.대원평생학습센터 [마을신문]

-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1부.
 2. 부서검토 조례수정(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이우완 의원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우수콘텐츠의 활용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에 이바지 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활동의 지원)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에 따라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경비 지원과 마을미디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 동 조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윤 선 한



창원시 의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이우완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8. 20.(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우완 의원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정지윤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대결 2021. 8. 6. 최진호

협조자 기획행정전문 정성희 위원

시행 의회사무국-8098 (2021. 8. 6.)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회사무국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4 팩스번호 055-225-4743 / jsisisi@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이우완 의원

1.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우수콘텐츠의 활용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